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개정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?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? 제12판을 송부하오니,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**실무 연락처**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해당 지침 게시판에 별도 첨부할 예정이며, **별도 서식**은 한글(HWP) 양식으로 추가 첨부하오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	<주요 개정 사항>	

①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·보고체계 개정

※ 한 달 간 (3월 14일 ~ 4월 13일)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

- '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', '응급용 선별검사' 양성+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
- (의료기관) RAT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환자 신고, 다만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

※ 확진환자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▶

- ▶ 한 달 간 (3월 14일 ~ 4월 13일까지)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
- ▶ 증상이 있고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,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
- 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

◇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
-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양성*
- * 한 달 간 (3.14~4.13까지) 한시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

◇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

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

※ 지자체는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을 수시로 확인하여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해 양성 통보, 격리통지, 확진자 조사 및 재택치료 배정 등의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함

② **확진환자 및 접촉자관리 방안 변경**(기시행)

- (기본원칙) 중증,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
- 격리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(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동시 전송 권고),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- (동거인)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(권고 준수 기간 10일)
- (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)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(격리조치 7일, 격리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)

③ **격리해제 및 자가격리 세부사항 변경** (기시행)

- (확진자 격리) 법정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(양성결과 확인일)로 명확화
 - * 격리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 + 증상 호전 등
- (자가격리 해제전 검사) 해외입국자,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(6~7일차)를 PCR에서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로 변경
 - *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자가격리 해제전(6~7일차) PCR 검사 실시

④ **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**

- (격리해제 부적정)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,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

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

※ 시행일: 2022.3.14.

- 붙임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.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1부.
3. (서식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1부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?모든 기관, 시도, 시군구, 학협회

역학조사관

김동섭

지침관리팀장

전결 2022. 03. 12.

주수영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9435 (2022. 03. 12.) 접수 M00004018491 (2022. 3. 14.)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/ <http://www.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9365 팩스번호 043-719-9469 / emt8193@korea.kr / 대국민공개

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